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 기증 근거 마련 〉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31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 기증 근거 마련 (안 제17조제2항·제21조의2 신설 등)	3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31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6.

(3) 회 부 일 : 2026. 3. 9.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때에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 (안 제21조의2 신설).

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해당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27조의2 신설).

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위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 기증 근거 마련 (안 제17조제2항·제21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21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①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뇌사추정자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하려는 환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①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다만, 환자의 장기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때에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 및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장기구득기관은 다음 각 호의

표시를 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이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라 한다)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다만, 환자의 장기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

1. 2.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뇌사추정자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

-----.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
-----뇌사추정자, 뇌사판정대상자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장기구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장기등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뇌사자의 가족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장기등 기증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3. (생략)

④ (생략)

⑤ 장기구득기관은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한하여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⑧ (생략)

<신설>

-----.

1. 뇌사추정자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

2. -----
-뇌사자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뇌사판정대상자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

⑥ -----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뇌사추정자, 뇌사판정대상자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

⑦·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사망시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 중 장기등 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의 사망시각은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한다.

<u><신 설></u>	<u>제27조의2(연명의료 담당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해당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생 략)</u>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u>제27조의3(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u> 제48조(벌칙) ----- ----- -----.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u>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뇌사 추정자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u> 3. ~ 5. (생 략) ③·④ (생 략)	<u>8.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수술에 참여한 자</u>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뇌사추정자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u> 3.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¹⁾을 기증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²⁾.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인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임(「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제5호³⁾).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이하 “이행 대상자”)의 예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 가족 등에 의하여 연명의료 중단등결정이 된 환자 등을 들 수 있음.
-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은 이행 대상자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을 장기 등의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⁴⁾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

-
-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이와 같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 기증은 혈액순환(심폐기능)이 소실된 상태에서 사망을 선언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신경학적 기준을 이용한 사망 선언(뇌사)과 차이가 있으며, 장기등 기증 유형의 분류에 있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이하 “DCD”)’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됨(DCD 유형: [참고] 첨부).
- 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따라서 현행법에 의하여도 원칙적으로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 기증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 기증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⁵⁾.

- 현행 「장기이식법」은 ‘뇌사자’에 대해서는 장기등 기증과 관련한 절차⁶⁾, 장기구득기관의 역할 및 준수사항, 사망시각의 정의 등을 정하고 있으나(동법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7조⁷⁾ 등), 이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아 의료인이나 장기구득기관 등이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에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제1항⁸⁾은 의사가 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장기등 기증을 위한 사전 조치⁹⁾나 의료적 처치를 수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의 장(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5) 실제로 2020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실시된 연명의료중단 이행 후 사망한 환자의 장기 이식* 등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 기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자료: KBS뉴스, “연명의료중단 후 국내 첫 장기이식…장기기증으로 생명 이어가”, 2021. 6. 1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209939>>)

(※ 장기 이식은 2020년에 이루어졌으나, 2021년 6월에 해당 사례가 대한의학회지(JKMS)에 게재됨.)

6) 의료기관 - 장기구득기관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통보·신고 등

7) [참고조문] 첨부

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9) 장기등 기증 동의, 장기등기증자 등록, 본인 또는 가족의 장기등 적출 동의(반대)의사 확인, 이식대상자 선정 등

- 이에 개정안은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 기증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등 이식의 수요·기증 불균형¹⁰⁾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¹⁾.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등 기증을 희망할 경우 **통보·신고 절차**(안 제17조)
- **장기구득기관**의 역할 및 준수사항(안 제20조)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사망시각**의 정의(안 제21조의2 신설)
- **연명의료 담당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안 제27조의2 신설)
- **벌칙**(안 제48조제8호 신설) 및 **과태료**(안 제53조)

- 동 개정안과 함께, 이행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할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에 기증을 위한 사전조치 및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¹²⁾이 발의되어 있으며, 동 개정안은 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10) 2024년도 장기등 이식 건수는 총 5,054건으로 이식대기자 54,789명의 9.2%에 그침(2024. 12. 31. 기준). 총 이식 건수 5,054건은 뇌사(1,506건), 사후 안구기증(24건), 생존자 기증(1,980건), 조혈모세포·골수(1,544건)를 합산한 것이며, 총 기증자는 3,931명임.
(자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4년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 2025. 7.).

11) 미국의 경우,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 기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043명의 이행 대상자의 기증이 있었고, 해당 기증자 수는 2007년 791명에서 2017년 1,88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Jericho BG., Organ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Ethical Issues and International Practices. Anesth Analg., 2019 Feb;128(2) (김도연,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고찰, 2024. 6. 재인용)].
다만 이행 대상자가 통상 고통이라는 점,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이식 건수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영국의 경우, 뇌사 후 기증자 1명당 평균 3.3개의 장기가 기증되는 데 비하여 이행 대상자는 1명당 평균 2.7개의 장기가 기증됨(김도연,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고찰, 2024. 6.).

12) 의안번호 제2217314호, 서미화의원안, 발의일 2026. 3. 6.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은 이행 대상자 및 뇌사추정자의 “장기”가 법 제11조제1항¹³⁾에 해당할 경우 장기구득기관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그러나 기증·이식의 대상이 되는 내장·안구·복합조직 등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장기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법 제11조제1항 또한 “장기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개정안 또한 “장기등”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안 제17조(뇌사추정자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하려는 환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①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다만, 환자의 장기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때에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이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라 한다)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다만, 환자의 장기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을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2.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3. 그 밖에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

- 또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의3¹⁴⁾은 「장기이식법」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신고된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조직기증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연계될 경우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장기이식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뇌사추정자’ 외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안 제17조·제20조), 필요 시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의3을 개정하여 잠재적 조직기증자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동 개정안 외에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 기증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장기이식법」 및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심사에 있어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의3. “잠재적 조직기증자”란 유족이 제16조의2에 따른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요청한 사망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뇌사추정자 중 가족이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요청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연계된 자를 말한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 기증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

의안명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200322 (한정애의원/ '24. 6. 11.)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 기증과 관련한 장기구득기관의 역할 및 준수사항, 사망시각의 정의, 연명의료 담당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벌칙 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200323 (한정애의원/ '24. 6. 11.)	이행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할 경우 통보·신고 절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에 기증 사전조치 및 처치 수행, 과태료 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219678 (서영석의원/ '26. 7. 1.)	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보·신고 절차, 장기구득기관의 역할 및 준수사항, 사망시각의 정의

자료: 각 법안을 바탕으로 작성

다. 관계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현재는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등 기증을 희망해도 관련 과정을 진행할 수 없어 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수용
- (대한의사협회) 장기등 이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신중 검토 필요
 -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상당수가 중소병원·요양병원·호스피스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장기등 기증절차와 연계될 경우 의료현장 혼란 초래 우려
 -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 근거에 대한 과학적·제도적 근거 미흡
 - 의료진 처벌 및 제재 규정의 보완 필요

□ (대한이식학회) 개정안을 수용하나,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대책 필요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기증 문화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기증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 설계·운영, 충분한 설명과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며,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 규정의 엄격한 준수 및 관리·감독 체계 등이 필요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조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해당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기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 뇌사조사서 작성 및 뇌사판정서, 회의록 제출 등 뇌사판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①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하여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뇌사추정자의 가족

2.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이 경우 뇌사추정자가 제15조의 장기등기증희망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 및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뇌사판정 등) ①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 신청이 된 뇌사추정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상태를 파악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이 경우 뇌사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를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뇌사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제출받으면 그 사본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뇌사판정 신청자에게는 뇌사판정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19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등 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장기구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장기구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장기등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뇌사자의 가족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장기등 기증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장기구득기관은 관할 지역이 설정되어야 하고, 해당 관할 지역의 뇌사판정기관과 잠재 뇌사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장기구득기관은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한하여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⑧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①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한다.

제27조(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뇌사자의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2. 해당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

【참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유형
-------------	--

범주 (유형)	정 의	비 고
I	병원 도착시 이미 순환정지가 발생한 경우	Uncontrolled (통제되지 않은 상황)
II	병원 밖에서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 나 실패한 경우	
III	뇌사상태가 아닌 환자에서 가족의 동의 아래 <u>연명의료중단 후 순환정지가 발생한 경우</u>	Controlled (통제된 상황)
IV	뇌사자에서 장기 적출 전 순환정지가 발생한 경우	Uncontrolled (통제되지 않은 상황)
V	범주II 환자와 유사하나 병원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주: 기증자의 사망 상태에 따라 DCD 유형(범주) 정의(마스트리흐트 분류체계, Maastricht classification¹⁵⁾)

자료: 국립혈액장기조직혈액관리원(주관연구기관: 고려대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동식),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20.

15) 이와 같은 마스트리흐트 분류체계는 기존의 마스트리흐트 분류체계(1995년)가 2013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6차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Organ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논의를 바탕으로 수정된 것임(Marie Thuong et al., New classification of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onors definitions and terminology, 2016.).
참고로, 이 표가 수록된 원자료(국립혈액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0.)는 2003년 수정된 마스트리흐트 분류 체계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2013년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